

	<h2>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</h2>	규정번호	3-6-10
		제정일자	2016.05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 교·내외 학생단체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생자치기구”란 학생회, 대의원회, 동아리 등 우리 대학이 승인한 학생단체를 말한다.
2. “학과”란 학과, 학부를 말한다.
3. “행정기관”이라 함은 직속기관, 행정부서, 부속기관, 부설기관을 말한다.
4. “학생단체행사”란 학생자치기구, 학과 및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교내·외에서 다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행사의 종류) 학생단체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행사: 입학식, 졸업식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
2. 학생행사: 축제, 체육대회, 학과 오리엔테이션, 학과 MT, 학과 학술제, 학과 작품전 등

제4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생자치기구, 행정기관 및 학과에서 주관하는 학생단체행사에 적용한다. 다만, 학교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안전관리책임자) 대학의 주관행사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회, 대의원회 주관행사: 학생성공처장
2. 동아리 주관행사: 동아리 지도교수
3. 학과 및 학생 주관행사: 학과(부)장
4. 행정기관 주관행사: 부서장

제6조(행사 신청 및 허가) 학생자치기구 및 학과가 교내·외에서 학생단체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행사 개시 7일전에 학생성공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승인에 의해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른다.

제7조(행사 허가 취소) 행사 허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한다.

1. 학칙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2. 학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
3. 그 밖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
제8조(안전교육) 교내·외 학생단체행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사전에 시행해야 하며, 필요시 관련부서 및 실무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학생행사의 취지와 목적
2.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,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사전교육
3. 인권침해행위(신체적 가해행위, 문자·언어적 가해행위, 성적 가해행위) 방지 교육
4. 그 밖에 음주, 폭행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예방교육

제9조(교내행사) 교내의 시설에서 학생행사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의 수업 및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 조성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한다.
2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3.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0조(교외행사) ① 교외행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전 사전답사 등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
1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사항
2. 숙박시설(장소) 안전에 관한 사항
3. 교통수단 안전에 관한 사항
4.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
5.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사항

② 학생자치기구 주관 학생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학생으로 하여금 사전답사 및 위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.

제11조(사고대처 및 보고)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인솔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수습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며, 관련 부서 및 학생성공처에 상황을 통보한다.

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학생성공처에 공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고대책위원회 구성) ① 학생단체행사와 관련하여 학생행사안전관리책임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고대책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학생성공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전략기획처장 및 해당 안전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행사및졸업여행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